

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2022년 11월 15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7 호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까지, 제1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퇴직심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퇴직예정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 기관(업체) 명 및 업종				
담당예정 업무				

$\frac{1}{2}$ $\frac{1}{2}$ $\frac{1}{2}$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
	직 위 성 명	청 럽 감 사 팀 장 이 영 남
	담당자 성명 (전 화)	양 현 석 (3 8 0 - 5 8 1 5)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u> <u>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u>	<u><삭 제></u>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

<u>행자의 지정</u> <u>3. 직무 재배정</u> <u>4. 전보</u>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u> <u>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u> <u>⑥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u> <u>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u>	<u><삭 제></u>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삭 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
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
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
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
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
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
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
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
은 공사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
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
다.

③ 계약담당자는 부적격자의 수의

<삭 제>

<삭 제>

계약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5
년 이내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에서 해임된 자
가 취업한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2021. 6. 3.>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
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
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
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
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사
장이 정한다.

제10조의2(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①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감사부서장에게 취업예정업체명,

<삭 제>

제10조의2(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

-----“별지 제23호서식”에

취업경위 등을 <u>보고하여야 한다.</u>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u>따라 제출해야 한다.</u> ----- ----- -----
<u>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u>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u>	<삭 제>
<u>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u>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사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u>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u>	<삭 제>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
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
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
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
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
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
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
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
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
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
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별지 제23호 서식]

퇴직심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퇴직예정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 기관(업체) 명 및 업종				
담당예정 업무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참고자료

□ 추진배경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18.1.16.개정 ’18.4.17.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8.12.24.개정, ’19.3.25.시행) 등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도입·시행함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공표, ’22.5.19.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2.6.2.개정·시행)

<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삭제 규정 현황 >

「공무원 행동강령」 삭제 조항(8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삭제 조항(7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 가족 채움 제한(§5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5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의6)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4)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4의2) ▶ 직무 관련 조안·자문 등의 제한(§4의3) ▶ 가족 채움 제한(§4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4의5)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10)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1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 도모